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1월 1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8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재육성과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상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상 부문을 정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청소년을 발굴 및 포상하고자 하며, 수상자가 지속적인 능력 개발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상부문 정비(안 제3조)
- 심사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명시(안 제9조)
- 수상자에 대한 특전 명시(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5. 11. 14.
- 회부일자 : 2025. 11. 18.
- 상정일자 : 2025. 11. 25.

2. 제안이유

- 청소년상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상 부문을 정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청소년을 발굴 및 포상하고자 하며, 수상자가 지속적인 능력 개발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상부문 정비(안 제3조)
- 심사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명시(안 제9조)
- 수상자에 대한 특전 명시(안 제14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모범청소년 등에 대한 포상 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나. 입법의 취지

- 수상 부문을 개정하고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신설하여,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통해 우수한 청소년을 발굴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 수상 부문에 모범선행 부문을 봉사선행 부문으로 하고, 체육인재부문을 신설함.
- 안 제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신설함.
- 안 제14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신설하여,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개최 또는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 됨.
- 다만, 안 제14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 신설과 관련하여,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개최 또는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하였는데, “참여”가 행사와 사업에 단순 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 됨.
- 또한 제2조 수상 대상 연령이 “9세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있어, 일부 연령이 실질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연령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기회 우선 부여”가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보조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 시 우대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는 관련 법률이나 조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상충될 여지가 있으므로,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됨.

붙임 관계 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전문개정 2011. 11. 18.]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6
----------	-----

제출연월일 : 2025.11.1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청소년상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상 부문을 정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청소년을 발굴 및 포상하고자 하며, 수상자가 지속적인 능력 개발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상부문 정비(조례안 제3조)
- 나. 심사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명시(조례안 제9조)
- 다. 수상자에 대한 특전 명시(조례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9. 8. ~ 9. 29.)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1334호, 인재육성과-10002(2025. 9. 30.)호
- 2) 규제심사 : 비규제 대상[기획예산과-13779(2025. 9. 3.)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13779(2025. 9. 3.)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반영[가족복지과-33032(2025. 9. 4.)호]
-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예산과-15472(2025. 10. 1.)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16298(2025. 10. 20.)호]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체육”을 “문화예술”로, “예술·체육활동”을 “문화·예술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봉사선행 부문: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청소년

5. 체육인재 부문: 각종 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개최 또는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① 청소년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모범선행</u> 부문: <u>효를 실천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거나 소외계층에 헌신하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청소년</u></p> <p>2. · 3. (생략)</p> <p>4. <u>문화체육</u> 부문: 각종 <u>예술·체육활동</u>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p> <p><u><신설></u></p> <p>② (생략)</p>	<p>제3조(수상 부문과 인원) ① ----- -----.</p> <p>1. <u>봉사선행</u> 부문: <u>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청소년</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문화예술</u>----- <u>문화·예술활동</u>----- -----</p> <p>5. <u>체육인재</u> 부문: 각종 <u>체육활동</u>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p>	<p>제9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뽑는다. <단서 신설>

③·④ (생략)

<신설>

----- .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개최 또는 지원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75호)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편군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연락처	(033) 330 - 2020